

고성군수리계관리조례안

(의안번호 제771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. 11. 28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2. 11. 30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2. 12. 17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정사유

-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가. 수리계의 조직기준 (안 제4조)
- 수혜자의 수가 5인이상일 것
 -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것
- 나. 수리계의 임무 (안 제10조)
-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(개·보수를 포함한다) 및 그 이용
 - 기반시설의 재해복구
 -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- 다. 경비의 부과기준 (안 제11조)
- 운영경비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
 -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
 - 기반시설의 감가상각충당금은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건은 2002년 1월 14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의 개정으로 동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수리계의 조직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정하기 위함.
- 농업기반공사 관리 지역외의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그 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하여 그 시설의 유지 관리에 따른 일부의 업무를 수리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에 이용자로 하여금 일부의 책임과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있어 수혜자의 수와 수혜지역의 면적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가?
- 답 : 수혜자의 수 5인이상과 수혜지역 면적 50,000m² 두가지 모두 충족 되어야 함.
- 문 : 안제11조 경비의 부과에 있어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금이 적립되어 있었으면 바람직 하겠다. 부연 설명바람.
- 답 :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기금이 적립되어 있을 경우가 가장 바람 직 함. 하나 현 실적으로 수혜자들이 미리 적립해 두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필요시 그 경비 충당을 위해 부과 하도록 규정함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2. 12. 1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